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251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1. 변호사 정덕교, 김동민

2.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두리, 김선일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3,158,016원 및 그 중 22,093,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D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전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2020. 11. 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부터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재판상 자백과는 다른 전제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